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1.

발 의 자 : 조계원 · 허성무 · 이성윤  
최혁진 · 김 현 · 이기현  
김우영 · 민병덕 · 임오경  
김교홍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카지노업, 경마, 경륜·경정 등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」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.

이로 인해 내·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뿐만 아니라 내국인출입이 금지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광고물등을 표시·설치할 수 없어 외국인 유치 및 관광 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광고물등을 표시·설치할 수 없는 카지노업은 내·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(안 제5조제1항제3호).



##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“제2조제1호가목”을 “제2조제1호가목(「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카지노업을 말한다)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지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광고물등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금지광고물등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. 다만,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·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·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5조(금지광고물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제2조제1호가목(「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카지노업을 말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